사가미하라시 국민건강보험세 안내서(한국·조선어)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 P1
2. 가입 탈퇴의 신고 ..... (1)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수속 P2
(2) 국민건강보험 탈퇴의 수속 P2
(3) 그 외의 수속 P2
＊‘연도’ 와 ‘연간’에 대하여 P3
3. 보험세에 대하여 ..... (1) 보험세의 결정 방법 P3
(2) 국민건강보험세 계산방법 P4
(3) 가입자 수나 전년 소득 변경 등의 경우 P5
(4) 보험세의 감액 제도에 대하여 P5
(5) 소득 신고에 대하여 P6
(6) 보험세의 감면에 대하여 P7
4. 보험세의 납부에 대하여 .... (1) 보험세의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P8
(2) 보험세를 체납하면 P8
(3) 납부가 곤란한 때 P8
＊문의처 P9

1.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 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세를 납부하고 이를 의료비로 보조해 주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는 근무처에서 가입하는 것과 주민 등록을 한 시구정촌에서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민 등록을 한 사람은 누구나 어느 한쪽의 공적 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세를 납부하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를 의료 기관등의 창구에 제시하고 치료비의 30% 또는 20%를 부담하게 되므로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된 체류기간이 3 개월을 초과하여 사가미하라시에 주민 등록을 한 사람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증 이용 등록을 한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

① 직장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와 그 부양 가족
② 생활보호 대상자
③ 75 세 이상인 사람
④ 체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사람(단, 체류 기간이 3 개월 이하이더라도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체류자격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람은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⑤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가입 탈퇴의 신고

수속 장소	① 국민 건강 보험 및 국민 연금과 ② 각 도시조성센터(하시모토·츄오 6지구·오오노 미나미는 제외)·출장소 ③ 미도리·미나미 구청 구민과 ④ 츄오 구청 구민과

(1)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수속

수속이 필요한 때	필요한 것	수속 장소
사가미하라시로 전입(입국)했을 때	·전출 증명서 또는 특례 전출 수속을 한 분은 개인번호카드 ·여권 ·체류카드	② ③ ④
직장 건강보험을 탈퇴했을 때	·체류카드 ·자격상실 증명서 등	① ② ③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출생 신고서 ·모자 건강수첩 ·체류카드	② ③ ④

※특정 활동에 의한 체류자격인 경우, 지정서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특정 활동 가운데 의료 목적, 관광, 보양 등에 의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나 보험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 기기 고장 등으로 마이나 보험증을 읽을 수 없을 때 마이넘버 카드(개인번호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정보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또한 마이나 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탈퇴의 수속

수속이 필요한 때	필요한 것	수속 장소
사가미하라시 밖으로 전출(출국)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확인서※ ·체류카드	② ③ ④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회보험 등의 자격 취득일을 알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확인서※	① ② ③
사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확인서※	② ③ ④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확인서는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함.

(3) 그 외의 수속

수속이 필요한 때	필요한 것	수속 장소
사가미하라시 내에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체류카드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확인서※	② ③ ④
세대주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체류카드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확인서※	② ③ ④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통지서를 분실했거나 오염되었을 때	·체류카드 ·오염된 경우, 그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통지서	① ② ③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확인서는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함.

●가입·탈퇴의 수속은 14 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데 신고가 늦으면…

◎ 아래에서 설명하는 보험세는 신고한 달부터가 아니라, 자격이 발생한 달까지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이후에 환급 수속이 필요합니다).

＊'연도' 와 '연간'에 대하여

'연도'…4 월부터 다음해 3 월까지의 12 개월간

'연간'…1 월부터 12 월까지의 12 개월간

3. 보험세에 대하여

보험세의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주 앞으로 납세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가입 수속이 늦어져 소급 가입하는 경우는 최대 3 년까지 소급 과세되며, 연도 단위로 납세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소급된 보험세의 납기는 1 회입니다.

(1) 보험세의 결정 방법

보험세는 전년 1 월부터 12 월까지의 소득 등을 기초로 **연도** 단위로 산정합니다.

보험세는 가입 신고한 달부터가 아닌, 사회보험의 자격상실이나 전입 등으로 인해, 사가미하라시의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계산합니다.

$$\text{연도 도중에 가입했을 때의 보험세…보험세(연액)} \times \frac{\text{가입한 달부터 3 월까지의 월수}}{12}$$

$$\text{연도 도중에 탈퇴했을 때의 보험세…보험세(연액)} \times \frac{\text{4 월부터 탈퇴한 전달까지의 월수}}{12}$$

(2) 국민건강보험세 계산 방법

2026 년도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 방법은 'A : 의료분', 'B : 후기 고령자 지원금분', 'C : 개호 납부금분' 및 'D : 어린이 지원금분'에 대해서, ①-③의 항목별로 각각 계산하여 그 합산액이 연간 보험 세액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세	【① : 소득할액】 전년도 총소득 금액 등 (※) -기초공제액	【② : 균등할액】 가입자 일인당 액수	【③ : 평등할액】 1 세대당 액수
A : 의료분	①의 6.75%	29,000 엔×인원수	18,000 엔
B : 후기 고령자 지원금분	①의 2.78%	11,500 엔×인원수	7,000 엔
C : 개호 납부금분	①의 2.32%	12,000 엔×인원수	6,000 엔
D : 어린이 지원금분	①의 0.28%	1,360 엔×인원수 18 세 이상 60 엔 포함※2	800 엔

※종합과세 분의 소득과 특별 공제 후의 분리 양도소득(단기·장기),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 손실의 이월 공제 후의 양도소득, 상장주식 등의 양도 손실과 배당 소득과의 손익 통산 후의 소득 및 이월 공제 후의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 종합과세 이외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 금액 등이라고 합니다.

※2 18 세 이상 균등할액(18 세 미만에 대한 균등할액 경감분을 18 세 이상이 부담하는 금액)

* 'B : 후기 고령자 지원금분'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지원을 위함. (가입자 전원에게 부과)

* 'C : 개호 납부금분'은 40 세부터 64 세까지의 가입자에게 부과.

* 'D : 어린이 지원금분'은 어린이·육아 지원금 제도를 위한 것으로, 가입자 전원에게 부과됩니다. (18 세 미만은 균등할액을 전액 경감)

* 과세 한도액(연간 보험세의 한도액)

'A : 의료분 : 67 만엔', 'B : 후기 고령자 지원금분 : 26 만엔', 'C : 개호 납부금분 : 17 만엔', 'D : 어린이 지원금분 : 3 만엔'

40 세가 되는 분	40 세의 탄생월(1 일이 생일인 분은 그 전달)부터, 'C : 개호 납부금분'이 부과됨.
65 세가 되는 분	65 세가 되는 분의 'C : 개호 납부금분'의 보험 세액은 65 세 탄생월의 전달(1 일이 생일인 분은 그 전전 달)까지의 월수로 계산. ※65 세 이상은 별도의 개호보험료가 부과됩니다.
75 세가 되는 분	75 세가 되는 분의 'A : 의료분', 'B : 후기 고령자 지원금분', 'D : 어린이 지원금분'의 보험 세액은 75 세 탄생월의 전달분까지 월수로 계산. ※75 세 이상은 별도의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가입자 수나 전년 소득 변경 등의 경우

연도 도중 가입·탈퇴를 하게 되어 가입자 수가 증감이 했거나, 전년 소득금액의 변경으로 인해 보험세액이 바뀌는 경우는 납세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연도 도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변경됩니다. 변경일의 전월 분까지는 이전 세대주에게, 변경월분부터는 새로운 세대주에게 새로 과세하여, 각각 납세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주의사항** 연도 도중 전입한 사람

◎타 시구정촌에서 전입해 온 경우 : 이전 주소지에 전년도 총소득금액 등을 조회하여 가입 수속을 밟은 다음달에 납세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아울러 소득금액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고지가 이전 주소지와 다른 분이나 월말에 가입 수속을 밟은 분은 납세 통지서가 2 회 송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주소지에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전 주소지에서 신고하고, 그 사실을 P9 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해외에서 전입해 온 경우 : 가입 수속때 국민 건강 보험 및 국민 연금과에 '국민건강보험세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4) 보험세의 감액 제도에 대하여

가. 법정 경감 제도(신청 불필요)

① 세대주와 그 이외의 가입자 전원의 소득금액 총액이 43 만 엔+{10 만 엔×(급여소득자 등※의 수-1)} 이하일 때 균등할액(18 세 이상 균등할액 포함), 평등할액이 7 할 감액됩니다.

② 세대주와 그 이외의 가입자 전원의 소득금액 총액이 43 만 엔+(31 만 엔×가입자수)+{10 만 엔×(급여소득자 등※의 수-1)} 이하일 때 균등할액, 평등할액이 5 할 감액됩니다.

③ 세대주와 그 이외의 가입자 전원의 소득금액 총액이 43 만 엔+(57 만 엔×가입자수)+{10 만 엔×(급여소득자 등※의 수-1)} 이하일 때 균등할액, 평등할액이 2 할 감액됩니다.

※ '급여소득자 등'이란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거나 공적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의사항

전년소득의 신고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이 ①-③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합치하더라도, 보험세의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도 단위로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 주십시오.

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경감 제도(신청 불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취학 아동의 균등할액(의료분, 후기 고령자 지원금분, 아동 지원분)을 5 할 감액합니다.

미취학 아동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한 달부터 6 세가 되는 날 이후의 최초 3 월 31 일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다. 특정수급자격자 등의 보험세 경감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통지'가 교부된 분으로서 다음 ①~③ 모두에

해당하는 분은 신고해 주십시오.

이직한 본인의 전년 급여소득을 100 분의 30 으로 계산하여 보험세를 경감합니다.

① 사가미하라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② 이직일에 65 세 미만인 분

③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통지'의 이직 이유 코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특정수급자격자 11, 12, 21, 22, 31, 32

·특정 이유 이직자 23, 33, 34

라. 산전 산후 기간의 보험세 경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할(한) 경우, 최대 4 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다태인 경우는 6 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세를 경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속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5) 소득 신고에 대하여

보험세의 소득할액은 전년 1 월부터 12 월까지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4 월부터 다음해 3 월까지의 12 개월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전년 소득의 신고가 없으면 올바른 보험세 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보험세의 감액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18 세 이상의 가입자 분은 1 월 1 일에 살고 있던 시구정촌의 시구정촌 민세 담당과에, 1 월 2 일 이후 입국한 사람은 국민 건강 보험 및 국민 연금과에 전년도의 소득을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회사를 통해서 신고하고 있는 사람이나 확정신고를 한 사람, 전입한 사람으로서 이전 주소의 시구정촌 민세 담당과에 신고한 사람 등은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년도 소득의 신고가 없는 사람, 전입 전의 시구정촌에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 해외에서 전입해 온 경우로 국민 건강 보험 및 국민 연금과 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세 신고서'및 반송용 봉투를 보내 드리고 있으므로 기입 후 제출해 주십시오.

(6) 보험세의 감면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2026 년도분**의 보험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h colspan="3">① ＜재해에 의한 감면＞</th></tr>
<tr><td colspan="2">재해에 의해 가옥 등이 1/3 이상 파손한 세대</td><td>2025 년 중의 세대의 소득이 1,000 만엔 미만인 경우</td></tr>
<tr><th colspan="3">＜실업 등·생활 곤궁에 의한 감면＞</th></tr>
<tr><td>②
실업 등</td><td>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해고나 도산 등), 사업부진 또는 휴폐업을 한 분의 세대</td><td rowspan="2">2026 년 중의 예상소득이 2025 년 중의 세대 소득의 7 할 이하로 감소한 경우※</td></tr>
<tr><td>③
생활 곤궁</td><td>생활을 위해 공·사기관의 보조를 받고 있는 세대</td></tr>
<tr><th colspan="3">④ ＜질병에 의한 감면＞</th></tr>
<tr><td colspan="2">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고액으로 오른 세대</td><td>2026 년 중의 의료비(세금 공제의 대상분)가 2026 년 중의 세대 예상소득의 3 할 이상 차지하는 경우</td></tr>
<tr><th colspan="3">⑤ ＜양도소득의 감면＞</th></tr>
<tr><td colspan="3">사업이나 주택 등의 채무를 반제하기 위해 2025 년 중에 토지, 가옥을 매각하고, 그 수입의 전액을 반제에 충당한 경우</td></tr>
<tr><th colspan="3">⑥ ＜수감 기간의 감면＞</th></tr>
<tr><td colspan="3">형사 시설 등에 수용되어 요양 지급 제한을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td></tr>
</table>

※2025 년 중의 세대 소득이 200 만엔 이하의 세대는 8 할 이하

②·③·④·⑤의 경우는 상기의 요건 외에도, 2026 년 중의 세대 예상소득액과 생활보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준 생활비와의 비율에 의해서도 적용 판정을 합니다.

*2026 년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⑥은 제외)

*2025 년도 이전의 보험세는 소급 감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⑥은 제외)

*세대 소득은 세대주(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주도 포함)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전원의 소득입니다.

상기의 신청 상담 창구는 국민 건강 보험 및 국민 연금과, 구청 구민과(츄오 구청은 제외), 시로야마·츠쿠이·사가미코·후지노의 각 도시조성센터입니다.

4. 보험세의 납부에 대하여

(1) 보험세의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사가미하라시에서는 4 월부터 다음해 3 월까지의 12 개월분의 보험세를 6 월부터 다음해 3 월에 걸쳐, 10 회(기)로 나누어 납부를 받습니다. 6 월 중순에 납세 통지서를 보내 드리므로 동봉의 납부서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6 월 이후에 가입 수속을 한 경우는 수속한 다음달부터 다음해 3 월까지 매달 나누어 납부해 주십시오. 납세 통지서와 납부서는 수속한 다음달 중순에 보내 드립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등에서의 창구 납부, 페이지(Pay-easy) 납부, 스마트폰 결제 PayPay 청구서 지불, d 바라이 청구서 지불, au PAY(청구서 지불), 라쿠텐 페이(청구서 지불))에 의한 납부, PC·스마트폰 등으로의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 있습니다.

(2) 보험세를 체납하면

보험세를 체납한 상태가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세는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십시오. 또한 지연된 날짜수에 따라 연체료도 발생합니다. 이 연체료도 납부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촉, 최고, 전화독촉 등

납부 기한까지 보험세 납부가 없을 경우 독촉장을 송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화나 문서 등으로 최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조사, 체납처분

독촉 후에도 보험세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예적금, 급료, 부동산 등)의 내용에 대해 은행이나 근무처, 관공서 등에 조사하여 재산 소유가 판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체납처분으로서 그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특별요양비 지급

체납이 지속되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의료기관 진료 비용이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신청하면 일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특별요양비로서 지급됩니다.

(3) 납부가 곤란한 때

예를 들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나,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병으로 고액의 지출을 하게 되어 생활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납세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납세 상담 창구

·츄오구 및 시외(도쿄도 23 구, 가나가와현을 제외한 도부현)에 거주하시는 분

→납세과 수납정리 제 1·2 반 ☎ 042-769-8300

·미도리구 및 시외(도쿄도(23 구 제외) 시정촌)에 거주하시는 분

→미도리 시세사무소 수납정리반 ☎042-775-8808

·미나미구 및 시외(사가미하라시를 제외한 가나가와현)에 거주하시는 분

→미나미 시세사무소 수납정리 제 1·2 반 ☎042-749-2163

※창구에서의 상담이 어려울 경우는 전화로도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처

·사가미하라시 국민건강보험 콜 센터 ☎042-707-8111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는 고객, 콜 센터 대응자 그리고 통역자의 3 자간의 통화로 대응해 드립니다.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타갈로그어, 힌디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통역자가 대응 중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공휴일 등, 연말 연시는 제외) 오전 8 시 30 분에서 오후 5 시 15 분까지

제 2·제 4 토요일 오전 8 시 30 분에서 정오까지

※다음 언어는 콜 센터 접수 시간 중에도 대응할 수 없는 시간대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언어	대응 불가 요일	대응 불가 시간대
베트남어, 태국어	없음	8 시 30 분에서 9 시까지
네팔어, 타갈로그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토요일	8 시 30 분에서 9 시까지